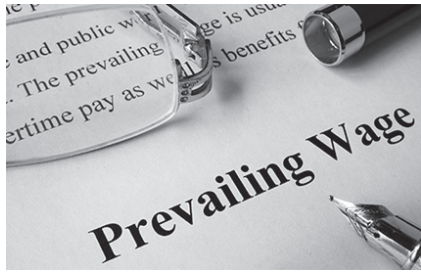


■ 법률 칼럼

취업이민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미연방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적정임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연방 노동부는 신청자의 직위 (job title), 학력 그리고 경력 (Job Experience)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직위 (Job title/position)에 적절한 적정임금을 책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적정임금은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 (Ability to Pay) 이 노동 승인서 (L/C) 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영주권 심사가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I-140 청원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이 적정임금만큼의 급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영주권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신청인들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 분들이 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서 그 자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폰서회사의 순이익 (Net Income) 이나 순자산 (Net Asset)이 책정된 적정임금보다 높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이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미 그 적정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계시다면 그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직종의 적정임금 수준이 3순위 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 이상의 취업 스폰서가 되는 회사는 회사 재정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학사와 그 전공 분야의 5년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3순의 취업이민의 경우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노동청이 적정임금 결정 시에 학사의 경우도 터무니 없이 높게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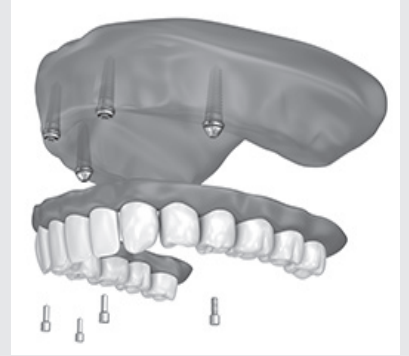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임플란트 틀니

틀니를 끼기 싫어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금니가 상실되어 브릿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임플란트를 제외하면 부분 틀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아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여 틀니가 필요없이 자연치처럼 독립된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전부 상실하여 완전 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시던 분들은 오랜 시간 사용하다보면 잇몸과 뼈의 변화가 일어나 틀니가 헐거워지는 현상에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렇다고 전부 상실된 치아를 모두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로 수복하기 위해서 드는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선뜻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아 하십니다.

사실 과거 임플란트가 처음 치과 임상에 적용될 때는 이런 완전 무치악 환자분들에게 주로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한쪽 턱의 치아 개수는 사랑니를 제외하면 14개 입니다. 14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게 아니라 6개 내지 8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임플란트 위에 고정하는 것이 초기 임플란트 치료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니 형태를 이용해 임플란트에 고정하다보니 임플란트 청결을 유지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틀니 하방면이 잇몸과 뜨도록 만들다 보니 음식물이 자주 끼는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연구가 거듭되면서 고정 보철물의 경우 자연치와 가까운 형태와 기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정성 보철치료의 고비용 문제는 여전히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치료 방법 중에 몇 개의 치아가 남지 않아 부분 틀니 조차도 하기 힘든 경우 치아의 뿌리를 치료해서 남겨두고 이 치근 위에 특별히 디자인된 장치를 부착하고 이 장치가 틀니 하방에 또 다른 장치에 끼워질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뿌리에 충치가 많이 생기고 큰 힘을 몇몇 치아가 다 받다보니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빠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리 인기 있는 치료법은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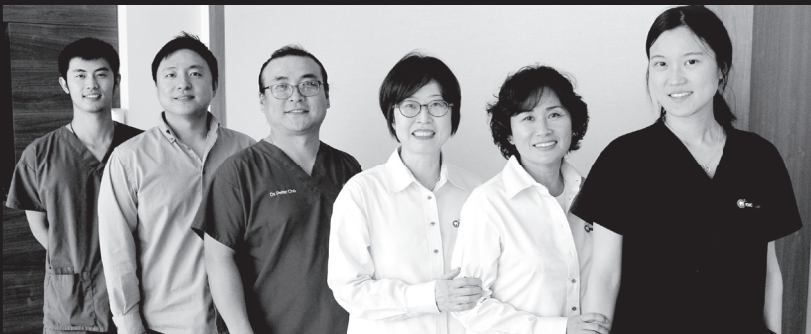
이 전통적인 치료법이 임플란트 치료에 적용되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고안된 이 치료 방법을 임플란트 오버덴처 (Implant overdenture) 라고 합니다.

▶ 1259호에서 계속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X-Ray Exam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350	잇몸치료 \$600 → \$300	틀니 \$1200 → \$850

KMC Dental Group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Hacienda Heights, CA 91745